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위탁기관 책임성 강화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324호)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00호)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26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개요 1

【정부제출】

- 1. 제안경위 1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박성훈의원안】

- 1. 제안경위 2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김선교의원안】

- 1. 제안경위 4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II . 검토의견 6

-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정부제출, 박성훈의원안) .. 6
- 2. 위험요인 및 위험징후에 대한 안전신고 규정 마련 등(정부제출, 박성훈의원안) 19
- 3.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 등(정부제출, 박성훈의원안, 김선교의원안) 26
- 4. 긴급구조지휘대 명칭 변경(정부제출) 36

I. 개 요

【정부 제출】

1. 제안경위

- (1) 제 출 자 : 정 부
- (2) 제출연월일 : 2024. 7. 3.
- (3) 회부연월일 : 2024. 7.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안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박성훈 의원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0.

(3) 회부연월일 : 2024. 8.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과 훈련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를 추가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예방 조치로 CCTV를 설치토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토록 하여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5조의4제1항, 제55조제2항, 제66조의13, 제71조제5항, 제74조의3제1항, 제74조의5, 제78조의2,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김선교 의원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9.

(3) 회부연월일 : 2024. 8. 3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두는 목적은 위탁 등을 통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또한 공무원 의제의 범위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을 포함하여 비밀유지의무 조항 및 관련 벌칙 조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단순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뿐만이 아니라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비밀을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비밀누설죄에 포함시켜 그에 따른 처벌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신설 및 제78조의5).

II. 검토의견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정부제출, 박성훈의원안)

개정안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¹⁾의 장의 조치의무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²⁾를 말함)를 설치·운영을 추가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통합 관제 근거를 마련하며, 통합관제센터에 재난안전상황실과의 협조체계 유지 및 재난관리정보의 공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7호의3 및 제74조의5 신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현행	정부 제출	박성훈의원안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7의2. (생략) <u><신 설></u>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예방조치 등) ① --- ----- ----- ----- ----- ----- ----- ---. 1. ~ 7의2. (현행과 같음) <u>7의3.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운영</u> 8.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u>제74조의5(영상정보처</u>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예방조치 등) ① -- ----- ----- ----- ----- ----- ----- ---. 1. ~ 7의2. (현행과 같음) <u>7의3.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보저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운영</u> 8.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u>제74조의5(영상정보처</u>

현행	정부 제출	박성훈의원안
	<u>리기기 통합관제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u> <u>③ 통합관제센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유</u>	<u>리기기 통합관제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u> <u>③ 통합관제센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유</u>

현행	정부 제출	박성훈의원안
	<u>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u> <u>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u> <u>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근거 마련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³⁾(CCTV)의 경우 설치·운영은 ① 범죄의 예방 및 수사, ②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③ 교통단속, ④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의 경우가 아니면 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⁴⁾하고 있고,

3)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⁵⁾에 대해서도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⁶⁾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범죄예방, 시설관리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CCTV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70만대를 상회하고 있으나, 재난 예방·대응 목적의 CCTV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해당 목적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용도의 CCTV 설치 및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CCTV의 재난 예방·대응 목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최근 5년간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현황]

(단위 : 대)

구분	목적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앙 행정 기관	범죄예방	82,506	80,492	74,258	75,691	82,041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25,044	140,219	155,542	164,086	172,920
	교통단속	9,008	10,365	14,402	19,434	25,865
	교통정보 수집·제공	10,101	2,738	12,908	16,606	17,657
	합 계	226,659	233,814	257,110	275,817	298,483
	증감률	8.8%	3.2%	10.0%	7.3%	8.2%
지방 자치 단체	범죄예방	338,230	419,246	470,304	520,521	574,148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211,794	235,554	267,274	299,508	332,432
	교통단속	21,538	28,433	33,685	36,846	41,242
	교통정보 수집·제공	8,135	10,933	13,640	13,628	21,720
	합 계	579,697	694,166	784,903	870,503	969,542
	증감률	12.4%	19.7%	13.1%	10.9%	11.4%
교육 기관	범죄예방	171,550	204,396	204,176	220,121	239,852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66,310	199,373	207,537	235,393	254,140
	교통단속	2,871	2,947	2,801	3,368	3,516
	교통정보 수집·제공	1,683	1,957	1,938	2,186	2,361
	합 계	342,414	408,673	416,452	461,068	499,869
	증감률	10.9%	19.4%	1.9%	10.7%	8.4%
합계	범죄예방	592,286	704,134	748,738	816,333	896,041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503,148	575,146	630,353	698,987	759,492
	교통단속	33,417	41,745	50,888	59,648	70,623
	교통정보 수집·제공	19,919	15,628	28,486	32,420	41,738
	합 계	1,148,770	1,336,653	1,458,465	1,607,388	1,767,894
	증감률	11.2%	16.4%	9.1%	10.2%	1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태조사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 규모 및 장소 등이 변화하는 재난의 특성상 이를 빠르게 파악하고 조치하기 위해서는 CCTV와 같은 고정형 장치뿐 아니라 이동통신단말장치, 드론 등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용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⁷⁾의 장이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고정형, 이동형 포함)의 설치·운영’을 추가하려는 것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재난위험 지역에 재난 예방·대응 목적의 CCTV를 설치하는 한편,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CCTV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관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018년 ~ 2022년 재난 피해 현황]

(단위: 건, 명,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연재난 ⁸⁾	인명피해 ⁹⁾	53	48	75	42	64
	재산피해	1,413	2,162	13,182	660	5,927
사회재난	발생건수	21	28	25	24	26
	인명피해	335	212	1,092	5,113	27,023
	재산피해	1,228	5,306	3,342	6,836	71,501

자료: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8) 자연재난 발생 건수의 경우, 재난 발생 시 재난 발생 기간 전체를 1회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일수를 기준으로 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통계적 어려움이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9) 자연재난의 인명피해는 사망, 실종자이며, 사회재난의 인명피해는 사망, 부상, 실종자임.

(2)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업무처리지침, 2013. 4.시행)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조례, 규칙 등을 마련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규정 예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장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등 제10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u>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u>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u>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관리하고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⑤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실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⑥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로부터 모든 영상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통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u>통합관제센터로 연계</u>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는 216개소이고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되어 있는 CCTV는 약 60만대에 이르고 있음.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인력 및 관제 대수(2023. 12. 기준)]

시·도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연계 CCTV 대수	1인당 관제대수
계	216	4,169	599,142	431**
서울	25	366	99,515	816
부산	16	286	26,008	273
대구	4	182	14,364	237
인천	11	195	23,258	358
광주	1	83	9,888	357
대전	1	63	8,247	393
울산	5	62	11,521	557
세종	1	25	3,958	475
경기	31	677	176,850	784
강원	18	214	21,123	296
충북	11	178	22,585	381
충남	15	287	34,974	366
전북	14	184	20,443	333
전남	22	442	29,738	202
경북	22	461	39,480	257
경남	18	363	41,692	345
제주	1	101	15,498	460

* 자료: 행정안전부

** 일반적으로 3교대 근무형태임.[599,142(대) / 4,169(명) * 3(교대) = 431]

연계 대상인 CCTV는 대부분 통합관제센터가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것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관내의 학교,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CCTV를 연계하여 관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다른 기관이 설치·운영 중인 CCTV의 연계·통합 관제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그 수는 미미한 실정임.

또한, 재난·안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한 재난·사고 등 현장 영상정보를 신속하게 재난안전상황실¹⁰⁾과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은 이러한 재난관리정보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기관 간 협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음.

개정안은 ①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② 통합관제센터가 연계·통합 관제할 수 있는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소관 CCTV뿐만 아니라 관할지역 내 다른 공공기관¹¹⁾의 CCTV까지 확장하며, ③ 통합관제센터에 재난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안전상황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및 재난관리정보 공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목적(범죄예방 등) 외에 CCTV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통합관제에 있어서도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재난의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제 대상 CCTV 범위의 확대 및 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통합관제센터에서 다루는 영상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상정보의 활용 범위를 목적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통합관제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통합관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면서, 통합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참고: 통합관제에 관한 유사 입법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가적으로, 정부안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및 다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CCTV와의 연계·통합 관제 목적으로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규정하고 있고, 박성훈의원안은 ‘예방’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CCTV 영상정보는 재난의 발생 전후에 걸쳐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부안과 같이 ‘예방·대비·대응’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됨.

2. 위험요인 및 위험징후에 대한 안전신고 규정 마련 등(정부제출, 박성훈의원안)

개정안은 안전문화활동의 범위에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또는 ‘안전신고’를 추가하고,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누구든지 관련 행정기관¹²⁾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요인 및 위험징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안전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호의2 및 제66조의13 신설).

현행	정부제출	박성훈의원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	제3조(정의)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	9의2. ----- -----	9의2. ----- -----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현행	정부 제출	박성훈의원안
훈련, <u>홍보</u>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 13. (생략) <신설>	--- <u>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u> ----- ----- ----- ----- ----- ----- ----- -----. 9의3. ~ 13. (현행과 같음) <u>제66조의13(안전 신고)</u> ①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험요인 등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에 신고(이하 “안전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간편하게 안	----- <u>안전신고, 홍보</u>----- ----- ----- ----- ----- ----- ----- -----. 9의3. ~ 13. (현행과 같음) <u>제66조의13(안전신고)</u> ①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에 신고(이하 “안전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를 받은 행정

현행	정부 제출	박성훈의원안
제9장 보칙 <u>제66조의13</u>(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생략)	<u>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③ <u>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 포털의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u> ④ <u>안전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요인 또는 위험징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u> 제9장 보칙 <u>제66조의14</u>(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현행 제66조의13과 같음)	<u>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위험요인 또는 위험징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u> ③ <u>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간편하게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④ <u>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 포털의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u> 제9장 보칙 <u>제66조의14</u>(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현행 제66조의13과 같음)

먼저, 안전문화활동의 정의에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또는 ‘안전신고’를 추가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문화활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17일부터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을 안전문화활동으로 추가하여 규정¹³⁾하였음.

그런데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정의 규정¹⁴⁾에서는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한 활동으로 명시하고 있어,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또는 ‘안전신고’ 관한 내용을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안전문화활동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에 따라 각종 사고를 예방하게 하고,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봄.

다만, ‘안전신고’는 국민의 활동에 해당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해야 할 안전문화활동은 ‘안전신고 활동의 장려’라고 할 것이므로, 정의 규정에도 ‘사고 예방 신고 장려’로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전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운영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한 경우와 같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정안은 누구든지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비교적 비긴급한 상황에서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가 발견된 경우에 대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 관련 신고는 의무사항인 재난신고와 달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 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자진신고를 접수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도 그 필요성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임.

다만,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별 소관 업무에 따라 별도 운영되고 있는 신고시스템을 안전신고에 관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근거 등 관련 규정을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에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만 법률에 명시하고 그 외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재난신고 및 안전신고의 비교]

구분	재난신고(현행)	안전신고(신설)
신고대상	긴급한 재난상황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징후 발견 즉시) * 화재 발생 시, 건물 붕괴 징후 등	비긴급한 안전위험요인 * 시설물 파손, 불법 주정차, 자동차·교통위반, 생활불편사항 등
신고방법	전화(119, 112), 긴급신고 바로앱	안전신문고(앱, 포털)
참여	국민의 재난신고 의무화	국민의 자율적 참여
처리	응급조치 등 즉시 대응	민원처리법령에 따라 통상 7일 (제도개선 건의 14일)
관련규정	<현행법> 제19조(재난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66조의13(안전 신고) ①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험요인 등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에 신고(이하 “안전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간편하게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 포털의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를 마련 하여야 한다. ④ 안전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요인 또는 위험징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현재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국민이 직접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을, 2015년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운영하고 있음.

[안전신문고의 신고 대상]

 안전신고 - 가물철 집중신고 -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 대기 오염 - 수질 오염 - 소방안전 -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소	 불법 주차차 신고 「도로교통법」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차차 ※ 불법주차차 - 소화전 - 교차로 모퉁이 - 버스정류소 -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 장애인·소방차 전용구역 -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등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이륜차 위반 - 버스전용차로 위반(고속도로제외) - 번호판 규정 위반 - 불법등화, 반사판(지)가림 손상 - 불법 튜닝, 해체, 조작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생활 불편 신고 - 불법 광고물 -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 쓰레기, 폐기물 - 해양쓰레기 - 불법 숙박 - 에너지 과소비 등 생활 불편 사항
--	--	--	---

안전신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024년부터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와 통합·운영함에 따라 이용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2024. 7. 기준 이미 700만건을 넘어서는 등 국민의 이용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음.

[안전신문고 신고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7월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1,889,200	4,940,870	5,654,076	7,528,979	7,010,083

자료: 행정안전부

3.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정부 제출, 박성훈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정부 제출안과 박성훈의원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의 기획·관리·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기관¹⁵⁾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임직원이 해당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권한 없이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며,

해당 총괄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¹⁶⁾의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그 총괄기관에게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6)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5항 및 제78조의2제2항 신설, 제78조의4).

이에 추가적으로 박성훈의원안과 김선교의원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등(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함)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¹⁷⁾와 재난관리체계 평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¹⁸⁾에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3 및 제78조의5).

현행	정부 제출	박성훈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취)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사용,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	정부 제출	박성훈의원안	김선교의원안
④ (생략) <신설>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총괄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권한 없이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총괄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생략) <신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78조의2(비밀유지 의무)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거나 제78조제3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제78조의2(비밀유지 의무)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거나 제78조제3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illegible]

현행	정부 제출	박성훈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 -----.		----- ----- ----- -----.
②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71조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총괄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 ----- ----- --업무에 종사하는----- ----- ----- ----- ----- ----- ----- -----.	② 제71조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총괄기관의 임직원과 제78조제4항에 ----- ----- ----- ----- ----- ----- ----- -----.	
제10장 벌칙 제78조의3(벌칙) (생략) 제78조의4(벌칙)	제10장 벌칙 제78조의4(벌칙)	제10장 벌칙 제78조의4(벌칙) (현행 제78조의3과 같음) 제78조의5(벌칙)	제78조의4(벌칙) (현행 제78조의3과 같음) 제78조의5(벌칙)

현행	정부 제출	박성훈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1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권한 없이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74조의3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1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74조의3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대비·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제78조의2를

현행	정부 제출	박성훈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신설>	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대비·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대비·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3. 제78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현행법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부당한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¹⁹⁾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④ 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

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정보의 처리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재난관리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부당한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²⁰⁾하고 있음.

또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연구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²¹⁾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업무 관련 정보의 부당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7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③ 재난관리정보의 처리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또는 재난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 업무 관련 정보의 부당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며,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으로, 해당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의 부정 사용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박성훈의원안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기관 및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이 이미 해당 기관들에 대해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²²⁾(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적용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중복입법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벌금형의 추가 및 자격정지 배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입법방식²³⁾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박정훈의원안 및 김선교의원안이 협약·위탁에 따른 업무 수행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22)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3) 김선교의원안은 현행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 중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음.

관련하여 ① 연구개발기관 임직원의 위반행위의 유형과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고, ② 연구개발성과의 연계·활용²⁴⁾을 통한 후속 연구개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만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긴급구조지휘대 명칭 변경(정부 제출)

개정안은 긴급구조지휘대의 명칭을 재난 현장에서 사용하는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장) ① (생략)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u>긴급구조지휘대</u>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 ----- ----- <u>긴급구조현장지휘대</u> -----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긴급구조기관의 장²⁵⁾이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구조지휘대’를 구축·운용하는 긴급구조기관에서는 ‘긴급구조현장지휘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용어를 통일시켜 실제 재난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긴급구조지휘대 현장 사용 명칭 및 설치기준]

현장 사용 명칭	설치기준
소방서 현장지휘대	소방서별로 설치·운영
방면 현장지휘대	2~4개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운영
소방본부 현장지휘대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운영
권역 현장지휘대	2~4개의 소방본부별로 소방청장이 1개를 설치·운영

자료: 행정안전부

문 의 처

02)6788-5349